

中國의 相續法 制度

中國南開大學教授 金岩

I.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도의 확립

현행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은 1985년에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상속 관계에 대한 법률적용은 혼인법 중 관련 규정을 기본 근거로 삼은 것이었다. 사실, 중국 상속법의 입법 작업은 일찍이 50년대에 이미 시작되어 오랜 곡절의 과정을 겪은 바 있다. 최초로 상속법이 중국 민법전의 일부분으로 제정된 것은 5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인데, 국가 입법기관은 여러 차례 《중화인민공화국민법》의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러 차례 초안을 기초하는 가운데 한결 같이 상속법의 기본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친 정치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상속 제도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모든 민법의 기초 작업은 정지 당하고 말았다. 1966년에서 1977년까지 중국 정치 대동란의 십 년 동안, 법률 제도는 엄중하게 타도 당했다. 국민 재산의 상속에 있어서, 합법적인 권리도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국민의 재산 상속권을 보호할 필요성 마저 의심하였다. 비록 중국의 첫 번째 헌법에서 이미 국민의 사유재산 상속권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지만, 1975년과 1978년 두 번의 헌법에서 상속권에 관한 규정을 취소하였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1979년 11월), 전국 인민 대회 상임위원회 법제 위원회의 주체하에 다시금 민법 기초 소그룹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기초한 민법 초안은 여전히 재산 상속을 독립된 하나의 편으로 삼고 있다. 중국 경제 체제에 대한 개혁이 막 진해 오디고 민법에서 다루는 사회 관계가 부단한 변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완전한 민법전을 제정하기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 민법을 조성하는 부분인 상속법은 다만 단행법의 형식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었다.

II. 중국 상속법의 기본 내용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은 모두 5장 37조로 나뉘어져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입법근거, 상속 개시 시간, 유산의 범위, 법정 상속·유언 상속·유언과 遺贈扶養協議의 관계, 상속권의 행사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상속권의 상실원인, 상속권 분규로 인한 소송의 시효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제2장은 법정 상속에 관한 것으로서, 남녀 상속인의 평등한 권리, 법정 상속인의 범위와 순서, 代襲相續, 유산의 분배 원칙과 분배 방법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제3장은 유언 상속과 유증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유언으로서 재산을 처분할 권리, 유언의 내용과 형식, 유언의 증인으로 볼 수 있는 자격, 노동 능력이 결핍되고 생활의 근원이 없는 상속인에 대한 보호, 계속되는 철회와 변경, 의무가 부가되는 유증, 유언 무효의 원인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제4장은 유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인데, 상속의 통지, 유산의 보관, 상속과 유증의 승낙과 포기, 유산과 부부 공동 재산·가정 공유재산의 관계, 유산의 법정 상속 절차에 의한 이전의 각종 원인, 태아가 응당 상속받을 뜻의 사전 보류, 유산 분할의 원칙, 생존 배우자의 재혼 권리, 遺贈扶養協議와 당사자의 권리 의무, 상속할 사람이 없고 유증받을 사람이 없는 재산에 대한 처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미납 세액을 남김없이 갚을 책임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제5장은 부칙으로서, 민족 차치 지방의 상속법에 대한 변통·보충 규정의 관철과 집행, 대외 상속 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 상속법의 시행 시기 등을 포괄하고 있다.

아래에서 중국 상속법 가운데 특수한 규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1.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순서에 관하여

중국의 상속법에서 규정하기를, 제1순위 상속자에는 배우자·자녀·부모가 포함되고 제2순위 상속자에는 형제 자매·조부모·외주부모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1) 배우자

배우자란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친족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의 부부 쌍방이다. 남녀간에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표준은 그들이 혼인신고를 했느냐를 보는 것이지 동거의 여부가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 생활에서, 혼인신고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동거를 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기간에 남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한쪽이 배우자로서 죽은 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야지만 비로서 정식 결혼으로 칠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최고 인민 법원이 1989년 한 항의 전문적인 사법 해석에서 한 규정에 의거하여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사실혼인관계와 비법률적 동거관계로 나눈다. 동거생활 기간에 한 쪽이 사망하는 경우 다른 한쪽이 죽은 자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 만약 사실혼인관계를 인정하면 배우자의 신분으로 상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즉 만약 남녀 쌍방이 결혼의 법정 조건에 부합되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데 단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로 추정되어 상호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비법률적 동거관계가 인정되고 상속법 제14조 규정에도 부합되는 경우, 상호 扶助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밖에 근년에 출현한 첨을 포함시키는 가에 관한 문제의 처리가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법률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첨을 포함시키는 것을 긍정하고 있어서, 배우자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상속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달리 처리해야 한다.

역사가 남긴 多配偶者 문제에 대하여, 건국 후 多配偶制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역사상 이미 존재하는 다배우자는 유산상속 방면에 있어서 그들의 상속권을 인정하였다.

(2) 자녀

① 친생자

혼인 친생자와 비혼인 친생자를 포함한다. 비혼인 친생자에 대하여 그 지위가 혼인 친생자와 같고, 상속 배당액도 같으며 평등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② 양자

피상속자가 키운 양자와 친생자의 법률을 지위는 같다. **入養法** 규정에 근거하여 입양 관계가 성립된 후 양자와 그 친부모의 권리 의무 관계가 해제되기 때문에, 양자의 친부모에 대한 상속권도 동시에 해제된다. 양자는 다만 양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을 뿐이지, 친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입양 관계가 해제된 후 친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당 구별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入養法》** 제2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입양 관계 해제 후 양자와 양부모의 권리 의무 관계는 바로 소멸되고 친부모 와의 권리의무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지만, 성년 양자와 친부모간 권리 의무 관계의 회복 여부는 협의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미성년 양자는 입양 관계가 해제된 후 친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지만, 다시금 양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만약 피입양자가 친부모에 대해 비교적 많이 부양한다면, 상속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이외에, 또한 상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친부모의 유산을 적당히 나누어 받을 수 있다.

③ 부양 관계가 있는 의붓자녀와 의붓아버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붓자녀와 의붓부모간에는 서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들간에 부양 관계가 형성된다면, 서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의붓자녀가 의붓부모의 유산을 상속한 것이 친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자와의 구별에 주의해야 하는데, 양자는 두 뜻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나 의붓자녀는 두 뜻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는 부양 관계가 있는 의붓자녀에게 이중의 부모 자녀 관계가 있으나 양자는 다만 양부모와의 권리 의무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2. 중국 상속법 중 특수한 상속인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 제12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배우자를 잃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 시어머니에 대해, 배우자를 잃은 사위가 장인 · 장모에 대해, 주요한 봉양의 의무를 다한 경우 제1순위의 상속인을 간주한다. 이 하나의 조항은 중국 법률 중에서 특유의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며느리는 시부모의 상속인이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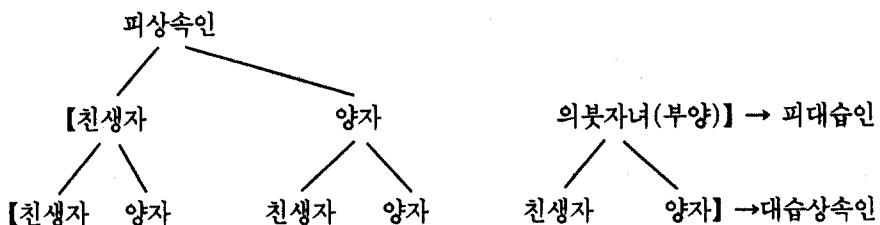
수 없고, 사위도 장인·장모의 상속인이 될 수가 없다. 다만 법정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며느리나 사위가 비로소 시아버지·시어머니 혹은 장인·장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이 하나의 조건이 바로 배우자를 잃은 경우이다. 이밖에 이러한 상속은 일방적인 것으로 서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를 잃은 며느리가 시아버지·시어머니에 대해, 배우자를 잃은 사위가 장인·장모에 대해 주요한 봉양의 의무를 다하는데 있어서, 주로 몇 개 내용을 본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공양, 혹은 노인과 공동생활을 하며 노인을 공양하는 전체의 책임을 맡는 것, 생활하는데 있어서 보살핌, 정신적인 봉양 등등이다.

3. 代襲相續에 관하여

중국 상속법 제1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피상속인의 잔가 피상속자보다 먼저 죽으면, 피상속인 자녀의 후세대 직계 혈족이 대습상속한다. 대습상속인은 일반적으로 그의 부친이나 모친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유산의 둘만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법의 규정에서 볼 때 대습상속에서, 중국과 외국의 상속법의 규정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고 인민 법원은 특별한 해석을 하였다. [최고 인민 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을 관철 집행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 26면] : “피상속인의 양자·이미 부양 관계가 형성된 의붓자녀의 친생자는 대습상속할 수 있다. 피상속인 친생자의 양자는 대습상속할 수 있다. 피상속인 양자의 양자는 대습상속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이미 부양관계가 형성된 의붓자녀도 대습상속 할 수 있다.”

【도표】



이 사법 해석에 근거하여 피대습인 중 친생자·양자와 부양 관계가 있는 의붓자녀를 포함하고 있고, 대습상속인 중에는 결코 피대습인과 부양 관계가 있는 의붓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유언의 자유와 제한

상속법은 국민에게 유언의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유산을 처리할 권리를 긍정함으로서(제16조) 국민의 최종적인 바램을 존중하는데, 이는 바로 법률이 사유재산을 더욱 전면적으로 보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법률은 유언의 절대 자유를 승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속법 제 19조에 규정하기를 “유언으로 노동 능력 결핍되거나 생활의 근원이 없는 상속자에 대해 필요한 유산 배당을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최고 인민 법원이 사법해석 제37조에 규정하기를 “유언자가 노동 능력이 결핍되고 생활의 근원이 없는 상속자의 배당을 보류하지 않은 경우 유산을 처리할 때, 응당 이 상속자를 위해 필요한 유산을 남겨두고 남은 부분은 유언으로 확정한 분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하기를 “상속인이 노동능력이 결핍되고 생활의 근원이 없는지의 여부는 마땅히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 이 상속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의거하여 확정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모두 유언 자유 원칙에 대해 필요한 제한을 함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상속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5. 유산

(1) 유산의 범위 확정

중국 상속법 제3조에 규정하기를 “유산은 국민이 사망시 남겨 놓은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다.”라고 하였다. 이 규정은 유산은 다만 죽은 자 생전의 개인 재산만 가능하고, 죽은 자가 생전에 타인과 공유한 재산 전부는 죽은 자의 유산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 방면에서, 비교적 두드러지는 문제는 부부가 공유한 재산의 처리이다. 중국의 법률에 부부의 재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천에 있어서 확실히 부부 공동 소유의 재산을 죽은 자 일방의 유산으로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생존 배우자 일방의 재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상속법 제26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부부가 혼인 관계 존속 기간에 얻은 공동소유의 재산은 약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만약 유산을 분할한다면 먼저 공동 소유의 재산의 반을 배

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상속인의 유산이 되도록 함이 마땅하다.” 상속법의 이 규정은 매우 구체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행의 관련 부부 공동 재산 관계를 처리하는 정식의 법률 중 여전히 첫 번째이다. 이밖에도 여기에서 규정한 것은 또한 배우자로서의 한쪽이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나눠 받고, 다시 상속자의 신분으로 죽은 자의 유산을 상속함을 표명하고 있다.

(2) 유산의 분배 원칙

유산 분배에서 중국 상속법은 균등배당을 원칙으로 하여 실행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불균등 배당의 방법의 실행되기도 한다. 특수한 상황하의 불균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즉, 생활에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노동능력이 결핍된 상속자에게 유산을 분배할 때, 마땅히 배려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주요한 부양의무를 다했거나 피상속자와 공동생활을 한 상속인에게 유산을 분배할 때 많이 분배할 수 있다. 부양 능력이 있고 부양 조건을 갖춘 상속인이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유산을 분배할 때, 마땅히 적게 분배하지 않거나 적게 분배해야 한다. 상속자가 협상하여 동의한 경우 불균등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이외에 중국 상속법에는 유산의 분배 방면에 있어서 또한 하나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즉 제1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상속인 이외의 피상속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노동능력이 결핍되고 생활의 근거가 없는 사람, 혹은 상속인 이외의 피상속인에 대해 비교적 많이 부양한 사람에 대해, 그들에게 적당한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의 유산 분배는 다만 상속인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 이외의 사람도 이 규정에 근거하여 마찬가지로 유산을 획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당연히 이러한 권리와 상속권은 구별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정을 참작하여 나누어 받는 유산권”이라고 칭하였다.

III. 완전한 중국 상속법에 대한 구상

중국 상속법이 공포 시행된지 이미 15년이 되었고, 이 법의 실천은 이 법률이 기본적으로 성숙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1. 사법 해석에 규범이 부족하다.

중국은 현 단계에서 《상속법》 이외에 최고 인민 법원에서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을 관철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약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반포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입법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법 해석이다. 비록 이 하나의 사법 해석이 심판을 실천하는데 대량의 지도적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국가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성 규정에는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는데, 어떤 해석은 불명확하고 어떤 것은 심지어 사람들의 오해를 쉽게 야기 시키며 또 어떤 것은 신법과 서로 저촉된다.

2. 인접 법률의 부문이 완전하지 못하다.

상속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은 혼인법으로서, 특히 이 법률 중 재산 제도 방면에 관한 규정이다. 현재 중국 현행 혼인법은 부부 공유재산 및 가정 공유재산 제도 방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는 상속법의 적용에, 특히 유산 범위의 확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모두 완전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마땅히 사법 해석과 입법을 통일시키고, 상속법을 민법전에 받아들여야 한다. 비록 중국의 상속법이 현재 단행법의 형식으로 출현하였지만, 이것이 결코 상속법의 민법 성질을 바꾸지 않으며, 이러한 점은 법학계에서 공인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민법전을 제정하는 몇 개의 구상 방안에서, 모두 상속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부터 중국 상속법의 완전성이 중국 민법전의 반포를 지표로 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